**MPQ (Minimum Purchase Quantity) 최소의무구매 조항 – 독점수입판매계약(Exclusive Agreement)에서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이행,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-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14. 선고 2017나24242 판결**

국제계약실무
KASAN
on your side

**계약조항**

**물품공급 계약서**

**제2조【상호간 업무 및 의무】**

1. "갑"(피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업무 및 의무
   가. 공급 제품에 대한 품질, 공급가격이나 재고의 변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
   나. 제품 홍보와 관련된 전국적 단위의 학회지원 및 브로셔 제공
   다. "갑"은 "을"(원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.
2. "을"의 업무 및 의무("을"이 공급한 대리점이나 거래처 포함)
   가. 공급제품에 대한 거래선 개척, 광고, 홍보 담당
   나. "갑"의 공지사항 등 영업정책 준수
   다. "갑"의 공급 제품에 대하여 "을"은 해당 지역 내의 병의원, 약국, 한의원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.
3. 판매지역 및 거래처
   가. 판매지역 및 거래처는 양자 간에 합의한 지역 또는 거래처에 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한다.
   나. "갑"과 "을"이 합의한 지역 및 거래처의 표시는 별도의 계약서에 규정한다.

**제6조【독점권 상실】**

"을"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독점권이 상실되며, 양자 협의하여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. 또한 "을"이 "갑"의 영업정책을 위반하여 "갑"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독점권은 상실된다.

**국내 총판의 최소구매수량 미이행, 계약조항 위반 상황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**

**국내 독점권 보유 총판의 주장요지 –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**

**법원 판단의 요지**

**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상실 효력 발생,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,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**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,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, 그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의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

는 경우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, ③ 오히려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독점판매권은 상실되고,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문 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판매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후 일정 시점에서의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국제계약, 영문계약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민형사소송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